

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 7일	
신청인	성명				생년월일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		
소유자 또는 점유자	성명				생년월일		
	주소				전화번호		
토지 소재지	지번	면적	사방지 면적	사방지 지정 연월일	비고		
		m ²	m ²				
해제신청 면적	m ²	해제목적		그 밖의 사항			

「사방사업법」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지방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 (「사방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합니다) 3.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